

2023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 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9. 21.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금융지원) :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요율 우대(기보, 신보), 중소기업 육성·운전 자금 우대, 선도기업 전용자금(리딩-부산론)
- (기술개발) :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등
- (마 케 팅) : 선도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 (컨설팅 지원) : 정부 R&D기획 지원사업 등

다. 선정분야([붙임] 전략산업 범위 참조)

구 분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스마트해양산업	친환경스마트선박,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지능형기계산업	정밀기계, 스마트팩토리(생산자동화), 하이테크소재, 로봇
미래수송기기산업	자율주행차, 항공, 드론
글로벌관광산업	MICE, 특화관광(의료, 뷰티, 해양레저)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서비스플랫폼(ICBM), 콘텐츠(영상, AR, VR, 게임), 스마트금융(핀테크, 블록체인)
라이프케어산업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고령친화용품, 방사선학과), 리빙케어(기능성식품, 향노화, 화장품), 라이프스타일(디자인, 신발, 패션의류)
클린테크산업	에너지시스템(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저장 및 서비스(ESS, 스마트그리드, 파워반도체), 환경대응(재난안전, 원전해체, 기후변화)

라. 선정절차

- 접수(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테크노파크 서류접수) → 심사·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부산광역시)

마. 신청대상

- 본사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①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서비스업 20억원)**인 기업 또는
 - ②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미만(서비스업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성장·고용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 기준 2019년 이전(업력 3년 초과) 매출 발생기업 대상

성장지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 이상
고용지표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상시근로자 중 청년 비중 30% 이상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3. 선정지표

-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 부여(정량50:정성50)

○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19~'21년)간 CAGR 값

: '19~'21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21\text{년도 매출액}/2019\text{년도 매출액})^{(1/2)} - 1) \times 100$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19~'21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19년 R&D투자비율+'20년 R&D투자비율+'21년 R&D투자비율) $\times(1/3)$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작성요령2 참조)

○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19~'21년)간 CAGR 값

: '19~'21년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율 = $((2021\text{년도 상시근로자}/2019\text{년도 상시근로자})^{(1/2)} - 1) \times 100$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9. 21.(수) ~ 10. 14.(금)

나. 접수기간 : 2022. 10. 6.(목) ~ 10. 14.(금) 18시까지

① 신청서 입력 : 2022. 10. 6.(목) ~ 10. 14.(금) 18시까지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https://www.busancompany.com>)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첨부양식(엑셀)파일 업로드 필수

② 구비서류 제출 : 2022. 10. 6.(목) ~ 10. 14.(금) 18시까지

○ 구비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함(2022. 10. 14.(금) 도착분만 인정)

○ 구비서류 접수처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2층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211호) 선도기업 담당자

○ 구비서류

- 선도기업 신청서 1부(홈페이지 입력 후 출력본)

※ <첨부 1> :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제출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1부(엑셀 출력본)

※ <첨부 2> : 첨부양식(엑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파일은 업로드**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각 1부(신청요건 확인)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위반유형 2가지** 법에 대한 **각각 신청**)

* 사이트주소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ocp/co/violInquire.do>)

** 위반유형 :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 사용용도 : 관공서제출용

*** 요청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 조회기간 : 2020.01.01. ~ 발행일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신청요건 확인)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정부24(<http://www.gov.kr>) 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년(2019, 2020, 2021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최근 3년(2019, 2020, 202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연도별 1부, 총 3부)
 - ※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 세액 인원만 인정함
- 최근 3년(2019, 2020, 2021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 기타수출 실적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기타수출실적증명서, <첨부 3>양식) 또는 유티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내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 연도별 기준 환율

년도	원/달러 기준 환율
2019	1,156.00원
2020	1,088.00원
2021	1,190.50원

- 최근 3년 인증서(국내외) 및 지식재산권(국내외)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 ※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2023년 선도기업육성사업 정규직/청년 비율 확인서<첨부 4>
 - ※ 자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1.12월 기준)
- 개인정보(신용)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첨부 5>

다.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선도기업 담당자(T.051-320-3531)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T.051-888-6738)

라.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참조

<신청 및 접수 절차>

홈페이지 공고 · 입력		<단 계>	<내 용>	<기 간>
		1단계 공고문 확인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 (www.busancompany.com)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22. 9. 21(수) ~ '22. 10. 14(금)
		↓		
		2단계 신청 접수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입력 및 접수 www.busancompany.com ·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 홈페이지 입력 및 출력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엑셀파일 홈페이지 업로드 및 출력	'22. 10. 6(목) ~ '22. 10. 14(금)
		↓		
		↓		
구 비 서 류 제 출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첨부 1> : 홈페이지에서 출력(대표자 날인 필수) 1부 · <첨부 2> : 엑셀 작성본 출력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 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만 제출 · 최근 3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첨부 3> or 유티레이드허브 증명서 · 최근 3년간 국내외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자료 · 2023년 선도기업육성사업 정규직/청년 비율 확인서<첨부 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 개인정보(신용)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첨부 5>	'22. 10. 6(목) ~ '22. 10. 14(금)
		↓		
		4단계 구비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구비서류 원본 제출 · 접 수 처 :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2층 기업지원단(211호) 선도기업 담당자	
		↓		
		5단계 접수 확인	· 선도기업 접수 담당자 (051-320-3531) (재)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 2층 211호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5. 선정발표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2022년 12월중)

6. 유의사항

가. 2023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대표자 날인 필수) 제출

나.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첨부 2>는 양식(엑셀)에서 작성 후 출력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필수)

- 기업현황 입력 시 성장전략서는 **자동 계산되며**, 그 외 항목은 반드시 공란 없이 기업 작성 필수(단위 확인)
- 수출현황, 신용평가등급 등 내용작성 후 공란이 발생되면, 내용은 '없음', 비중은 '0'으로 작성

다.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첨부 3>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

-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작성 및 출력 후 외국환은행장 날인 제출

라. 구비서류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선도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선도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음

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아. 선도기업 책임자는 3년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

[붙임]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산업 범위

구 분	범 위
스마트 해양산업	1.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업 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양·항만 분야 물류사업과 관련된 산업 3.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스마트해양산업
지능형 기계산업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산업 2. 신소재 관련 산업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산업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능형기계산업
미래수송 기기산업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2.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산업 3. 자동차 및 항공 관련 일반기계부품·소재산업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미래수송기기산업
글로벌 관광산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과 관련된 산업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글로벌관광산업
지능정보 서비스 산 업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게임산업 4.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관련 산업 5.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라이프 케어산업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3. 「부산광역시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향노화산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5. 신발제조업, 신발부품·소재 제조업 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제조업 7.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라이프케어산업
클린테크 산 업	1. 재난 관련 산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3.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클린테크산업

(참고)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 해당여부 ☒

신 청 요 건					
기본 (자격)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본사 기준)			☐ 여	☐ 부
	◦ 부산 7대 전략산업 해당 기업 ※ 스마트해양산업 ☐ / 기능형기계산업 ☐ / 미래수송기기산업 ☐ / 클린테크산업 ☐ 지능정보서비스산업 ☐ / 라이프케어산업 ☐ /글로벌광광산업 ☐			☐ 여	☐ 부
	◦ 21년도 매출액 400억원(서비스업 20억원) 이상 기업			☐ 여	☐ 부
	◦ 21년도 매출액 400억원(서비스업 20억원) 미만 기업 - 아래 성장 및 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				
	성장지표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 이상 ☐			
	고용지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			
		◦ 전년도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			
◦ 전년도 상시근로자 중 청년 비중 30% 이상 ☐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 여	☐ 부	
제 출 서 류					
필수	1	◦ 선도기업 신청서 1부(홈페이지 입력 후 출력본)		☐ 여	☐ 부
	2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1부(업로드 엑셀파일 출력본)		☐ 여	☐ 부
	3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 각 1부(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 여	☐ 부
	4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여	☐ 부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여	☐ 부
	6	◦ 사업자등록증 1부		☐ 여	☐ 부
	7	◦ '19 ~ '21년 재무제표 각 1부		☐ 여	☐ 부
	8	◦ '19 ~ '21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12월 귀속분)		☐ 여	☐ 부
	9	◦ '19 ~ '21년 직간접 수출액 증빙자료 각 1부		☐ 여	☐ 부
	10	◦ '19 ~ '21년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사본 각 1부		☐ 여	☐ 부
	11	◦ 2023년 선도기업육성사업 정규직/청년 비율 확인서 1부(첨부 4)		☐ 여	☐ 부
	12	◦ 개인정보(신용)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첨부 5)		☐ 여	☐ 부